

인증지원

인증
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

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**지원대상** : 대·중견·중소기업

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■ 지원대상

	인증대상
재난안전제품 인증	-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-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※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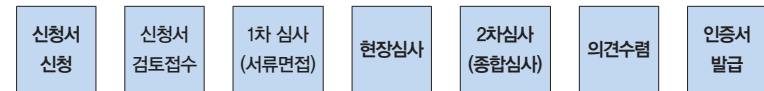
■ 지원내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
 -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
-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(1점) 부여
 -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별지 1의17

-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
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(인증기간) 3년 이내
-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
 - ※ 인증의 유효기간(3년)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,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,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

■ 신청방법

■ (심사절차)



■ (수수료)

- (신규 신청) 무료, (연장 신청) 금 50,000원

■ 문의처

-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(ksis.go.kr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☎ 02-3460-9190, 9180, 9028